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

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)

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 단,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.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자격갱신의 방법)

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.

제 4 조 (서류제출)

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)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사본
2)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
3)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

제 5 조 (연수교육)

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조 (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)

1)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2)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 단,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)

1)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.
2)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 8 조 (보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1)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)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.
3) 본 규칙은 2001년 1월 4일 개정되었다.
4) 본 규칙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.
5) 본 규칙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었다.